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장인홍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21일

발 의 자 : 장인홍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성언, 김경자(양천), 김동욱,  
김광수(도봉), 김문수, 김생환,  
박기열, 오경환, 유동균,  
이정훈, 장홍순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직원단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인 아동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교직원단체 정의를 변경함(안 제2조 제2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교육기본법」  
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.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중 “교원으로” 를 “교원과 퇴직교원으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직원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  1. <생략>  2.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<u>교원</u> 으로 구성된 단체	(현행과 같음)  1. (현행과 같음)  2. ----- ----- --- <u>교원과 퇴직교원</u> -----